

Samil PwC Assurance Monthly Newsletter

July 2021



삼일회계법인

Contents

GAAP

- 04 상장회사의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2022년도 중점심사 회계이슈 · 업종 사전예고 (금융감독원)
- 09 비상장회사의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2022년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한국공인회계사회)

GAAS

- 14 2020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금융감독원)
- 16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여부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TAX

- 20 최신 세무뉴스
- 21 최신 세무예규판례

KSOX

- 24 KSOX 동향

01

GAAP
회계



GAAP

상장회사의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2022년도 중점심사 회계이슈 · 업종 사전예고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의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하여 2022년도에 진행하는 재무제표 심사시에 점검하게 될 4가지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 작년부터 회계이슈 관련 심사 대상 업종을 제시하여 해당 업종의 회사 및 감사인은 특히 유의 필요

2022년 중점점검 회계이슈

종속 ·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업종]

제조업(석유정제, 철강, 자동차)
도 · 소매업 / 항공운송업 / 정보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 종속 · 관계기업에 대한 손상징후 검토
 -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업종 유의
- 손상평가(회수가능가액추정 등) 수행
 -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등의 합리적인 근거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업종]

전 업종

- 수익인식 모형(5단계)에 따른 수익인식
 - ①고객과의 계약식별 ②수행의무 식별 ③거래가격 산정 ④거래가격을 수행의무 내 배분 ⑤의무이행시 수익인식
- 거래의 객관적 증빙 및 실질 유의
-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주식 공시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업종]

제조업(음료, 금속, 기계 · 운송장비)
건설업 / 운송업

- 금융부채 분류에 따른 측정의 적정성
 - 당기손익 · 공정가치 부채, 금융보증계약 등
- 금융부채 관련 주식 공시
 - 금융위험(유동성위험, 시장위험 등) 질적 · 양적 정보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

[업종]

전 업종

-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 · 비용 표시
 - 재무구조 취약기업 등 유의
- 영업부문 관련 주식 공시
 - 보고부문별 정보(당기손익, 자산 등) 및 지역별, 주요고객별 수익 등에 대한 정보

1.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 선정배경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속·관계기업의 손상징후가 존재함에도 손상검토를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하여 손실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고, 특히, 무자본 M&A 등 불공정 거래의 수단으로 취득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의 부실평가로 인한 자산 과대계상 사례 빈번

• 대상업종

제조업(석유정제, 철강, 자동차) / 유통 / 항공운송 / 영상 제작 및 배급 / 여행 등 관련 업종

• 선정기준

자산 대비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비중 및 관련손익 변동 등을 감안하여 대상 회사 선정

※ 회계처리 유의사항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징후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손상평가 수행

- ① 내·외부 정보를 종합하여 손상징후를 살피고, 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
- ② 회수가능액은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할인율, 매출 성장률, 원가율 등) 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추정

※ 회계오류 예시

- ① A사는 종속기업 甲사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검토 과정에서, 중단(예정) 사업부문의 매출 추정액을 포함하고 실제원가율과 차이가 큰 목표원가율을 적용하는 등 미래현금흐름을 과대 추정하여 별도재무제표상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였고,
- 사업결합을 통해 인수한 종속기업 乙에 대해서도, 인수 후 지속적인 적자 발생 및 투자주식 장부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순자산가액 등 손상징후가 있었음에도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않아 투자주식 손상차손을 과소계상
- ② B사는 무자본M&A를 통해 인수한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인터넷단말기 제조사인 ◇◇사 투자 명목으로 관계기업 丙사에 송금한 후 이를 회수가 불가능한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丁사에 대여하도록 하였음에도 丙사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 을 인식하지 않음

* 丙사는 丁사에 대한 대여금을 손상처리 시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전환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 **선정배경**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통해 손익을 왜곡시키고 주석으로 충분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수익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인식하고 관련 주석요구사항을 기재하고 있는지 점검 필요

- **대상업종**

업종 연관성이 크지 않아 쉐 업종을 대상

- **선정기준**

특수관계자 수익 비중 및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 회사 선정

※ 회계처리 유의사항

특수관계자와 거래에 대해 新수익기준(K-IFRS 제1115호)을 적용하여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 ① 고객과의 계약별 수행의무 식별, 변동대가 등의 추정, 거래가격 배분 및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 등 수익인식모형(5단계) 적용
- ②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금액(재화나 용역의 매출), 채권 잔액(대손충당금 설정액 및 대손상각비) 등을 주석사항으로 충실하게 공시

※ 회계오류 예시

- ① C사는 새로 진출한 바이오사업에서 매출 발생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 제품이 생산되거나 출고되기 전에 판매대리점 □□사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 특수관계자 甲사와 거래처 乙을 통해 우회적으로 판매대리점 □□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판매대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것처럼 조작하여 허위 매출을 은폐
- ② D사는 미국 소재 특수관계자 丙사와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하면서 丙사가 보관중인 장기(3~5년) 미판매 위탁제품(의료기기)를 인수하도록 하여 매출로 일시에 회계처리하였으나,
- ①제품 특성상(표준규격 이외 스펙) 판매가능성이 낮고, ②기존 매출채권이 연체되고 있으며, ③판매대금 회수시기가 불명확*하는 등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수익을 인식하여 매출 과대계상

* D사가 지급결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丙사가 정하도록 함

3.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 **선정배경**

주주간 약정(M&A, 자금조달 등) 및 지급보증계약 등과 관련된 금융부채와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약정 등의 관련 주식 등이 누락되는 오류사례가 빈번하여, 금융부채의 인식 및 측정과 공시 점검 필요

- **대상업종**

제조업(음료, 금속, 기계·운송장비)/ 건설업/ 운수업 등 관련 업종

- **선정기준**

부채비율 등 부채현황 및 관련 주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하여 대상 회사 선정

※ 회계처리 유의사항

금융부채와 관련된 약정·계약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금융부채를 누락 없이 계상하고, 주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 ① 금융부채를 각 범주별로 적정하게 분류하여 인식하고,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후속 측정
- ②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금융위험*(유동성위험, 시장위험 등)에 관한 질적·양적 정보 및 관련 약정을 주식사항으로 충실하게 공시

* 금융부채 만기분석, 위험변수(이자율과 환율 등)로 인한 민감도 분석(최대 손실예상액), 금융보증계약으로 인한 위험 노출액

※ 회계오류 예시

- ① E사는 기존 농기계 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PEF 甲사(사모투자합자회사)와 공동으로 SPC 乙사를 설립하여 ◆◆사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PEF 甲사에게 ◆◆사의 실적에 근거한 SPC 乙사의 기대수익률이 낮은 경우 보유중인 SPC 乙사 주식 전부를 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매도선택권(풋옵션)을 부여하였음에도, 이를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 ② F사는 특수관계자 丙이 시설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관련 금융보증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 ③ G사는 자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거래처 丁에게 타 거래처로부터 수취할 어음(매출채권)을 배서하면서, 丁이 어음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G사가 상환해주기로 약정하는 등 관련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그대로 보유하였음에도 이를 매각거래로 처리하여 금융부채를 과소계상

4.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정보 공시

- **선정배경**

재무구조 취약 회사가 관리종목지정 회피 등의 목적으로 영업이익을 과대계상 할 개연성이 있어 영업이익 표시에 대한 점검이 필요. 또한, 특정 사업부문의 자산손상을 회피하고자 부문별 영업이익을 조작하여 공시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고, 최근 심사·감리 시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등 지적사례가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영업부문정보 공시도 점검 필요

- **대상업종**

업종 연관성이 크지 않아 쉰 업종을 대상

- **선정기준**

최근 영업이익 실적 및 재무비율(유동비율, 영업이익율 등) 비교 등을 감안하여 대상 회사 선정

※ 회계처리 유의사항

영업이익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영업부문 관련 주석기재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공시

①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이익을 영업이익으로 적정하게 표시

② 보고부문 및 주요 지역·고객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주석사항으로 충실하게 기재

* 부문별 재무정보(당기손익 등) 및 기업 전체 수익의 10% 이상인 고객별 수익금액 등

※ 회계오류 예시

① H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별도기준)을 기록하게 되자 관리종목대상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H사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비용(자문료, 임차료 등)을 종속기업 A에 자금을 송금(대여금 처리)한 후 종속기업의 영업비용인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별도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을 과대계상

② B사는 카지노 사업의 영업이익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게자 VP고객 모집인 □□ 등에게 지급한 고객알선 마케팅 비용을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한 후 바로 상각하는 방식으로 비용화하여 판매관리비인 지급수수료가 아닌 영업외비용인 기타대손상각비로 인식함으로써 영업이익을 과대계상

③ J사는 총 수익의 10% 이상을 매출한 주요 고객이 존재하였으나, 이러한 사실과 해당 주요 고객별 매출액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 [2022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업종 사전예고 상세보기 \(fss.or.kr\)](http://fss.or.kr)

GAAP

비상장회사의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2022년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 대상회사 등 제외)의 재무제표 심사·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에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와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예고하고, '22년 중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

중점점검 4대 회계이슈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 및 주석공시 적정성

- 특수관계자 대여금 등 회수가능성
- 특수관계자거래 수익인식요건 충족, 거래의 경제적 실질 반영 여부 및 주석공시 적정성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 재고자산은 저가법으로 평가
 -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
- 순실현가능가치 추정 타당성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 적정성

- 유의적 영향력을 갖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여부
- 지분법회계처리
(지분변동, 배당금, 피투자기업 재무제표 신뢰성 검증)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인식 적정성

-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을 위해 필요한
“향후 과세소득 발생가능성” 검토내역 적정성
-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누락 여부

1.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및 주식공시 적정성

• 선정배경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식공시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거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은폐·축소하려는 유인이 상존하고, 관련 거래내용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상세하게 주식으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여 점검 필요

※ 회계오류 예시

- ① A사가 형식상 종속기업의 재고자산을 매입하여 발주처에 납품하더라도 재고자산 거래의 위험과 효익을 실질적으로 종속기업이 부담(A사는 단순 판매 대행)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종속기업의 매출과 매출원가임에도 동 거래금액을 A사의 매출과 매출원가로 과대계상
- ② B사는 종속기업에 유상으로 공급한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 및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이전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 ③ C사는 상계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특수관계자 차입금과 대표이사 대여금을 상계처리하고, 관련 내역을 주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 대여금의 회수가 불확실함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음

• 선정기준

동종업종 평균대비 금액의 대여금이 계상되어 있는 회사, 매출액 대비 특수관계자 매출·매입 규모가 큰 회사 등을 심사대상 회사로 선정

• 회계처리 유의사항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오류로 인해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식공시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의 존재와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해야 함에 유의

- 특수관계 유무를 고려할 때에는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 관계에도 주의
-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관련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적절히 회계처리하여야 함에 유의(예. 거래 실질에 따른 총액 또는 순액 회계처리 및 수익인식요건 충족여부 판단 등)

2.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 선정배경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고자산이 급격한 가치하락 및 진부화위험 등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지 않음으로써 회사 실적 및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

※ 회계오류 예시

- ❶ A사는 정상영업주기내에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에 대하여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아,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
- ❷ B사는 거래처가 주문 제작된 장비의 구매주문을 취소하여 실질적으로 판매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이를 순실현가능가치에 반영하지 않아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

• 선정기준

총자산 대비 재고자산 비중이 높은 회사, 동종업종 평균보다 재고자산(재고자산평가충당금) 비중이 과다(과소)한 회사, 전기 대비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변동비율이 큰 회사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

• 회계처리 유의사항

재고자산은 물리적 손상,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는 경우 저가법을 적용하여,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

3.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 적정성

• 선정배경

투자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피투자기업 지분상품에 적용되는 지분법과 관련하여 회계처리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지분법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지분상품 회계처리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 또는 피투자회사 가결산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수행하지 않은 사례 있음

※ 회계오류 예시

- ❶ A사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피투자기업 지분상품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예: 최초 취득 이후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중소기업 회계처리특례)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분법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한 사례)
- ❷ B사는 재고자산 평가 등의 회계처리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 피투자기업 가결산재무제표의 신뢰성을 검토하지 않고, 지분법을 적용하여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을 과대계상
- ❸ C사는 지분법 적용시 수취할 배당금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하여야 하나 배당금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고,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 지분율 변동시 구체적으로 규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함

• 선정기준

총자산 대비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비중이 큰 회사,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 등을 중점심사대상으로 선정 고려

- **회계처리 유의사항**

피투자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지분법 적용대상 회사인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지분법 적용시에 구체적인 상황(배당금, 지분율 변동 등)별로 규정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피투자기업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경우 신뢰성 검증책임이 투자기업에 있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

4.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 적정성

- **선정배경**

비상장기업의 경우 이연법인세 관련 회계처리기준의 복잡성으로 인해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고, 경기 침체 및 기업환경 악화에 따른 실적 부진 등으로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부채비율 감소 등의 목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거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상존하여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

※ 회계오류 예시

- ① A사는 당기말 토지의 재평가 증가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서 이와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과소계상
- ② B사는 계속해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이월결손금이 누적된 상황이고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낮아,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여 자본잠식금액을 축소하거나 부채비율이 낮게 산정되도록 회계처리

- **선정기준**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증감 현황, 자산(부채) 대비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비중 및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등을 종합하여 심사대상회사를 선정

- **회계처리 유의사항**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비상장기업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기업은 이연법인세 회계처리기준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하여 관련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여야 함

특히,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K-IFRS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계처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관련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유의할 필요

02

GAAS

회계 관련 감독기관 동향



2020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금융감독원)

1. 배경

- 금융감독원은 매년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사업보고서가 작성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중점점검* 을 실시
- 점검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회사에 통보하여 자진정정하거나 차기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지도

*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에 금융감독원이 사전예고(21.2.22.)한 중점 점검항목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점검

2. 점검결과

- **재무사항**
점검대상 2,602사* 중 기재미흡사항이 발견된 회사는 643사로 **미흡률이 24.7%이며, 전기보다 19.8%p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

* '20년 사업보고서 제출회사(12월말 법인) 2,808사 중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2,602사(상장 : 2,206사, 비상장 : 396사)

주요 미흡유형 (미흡률)	세부사항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내용 기재 미흡 (36.4%)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에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사업보고서 본문에 누락
외부감사제도 운영현황 공시 미흡 (21.1%)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에 회계감사 보수 및 시간을 계약 내역과 실제수행내역을 구분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거나 미구분
재무제표 재작성 등 영향 공시 미흡 (9.2%)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 합병, 영업양수도 및 재무제표 재작성 등 중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
전·당기 감사인 의견불일치 관련 기재미흡 (1.7%)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로 비교표시 전기재무제표가 수정된 경우 불일치 세부정보를 누락하거나 조정협의회 개최 내용을 누락

• **비재무사항**

점검대상 2,391사* 중 2,021사에서 기재 미흡사항이 최소 1건 이상 발견되어 **미흡률이 84.5%이며 전기보다 38.2%p 증가**

* '20년 사업보고서 제출회사(12월말 법인) 2,808사 중 일부 비상장사 등을 제외한 2,391사(상장: 2,287사, 비상장: 104사)

주요 미흡유형 (미흡률)	세부사항
상법 시행령 개정 관련 사항 (57.4%)	정관 변경이 주총 안건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기재누락하거나 과거 3년간 정관 변경이력을 부실기재
배당에 관한 사항 (63%)	배당수준의 방향성, 배당목표 결정시 사용된 재무지표 산출방법 등 구체적인 배당정책을 부실기재
특례상장기업 공시 (80%)	관리종목 지정유예 해당여부, 유예종료시점 기재를 누락하거나 미사용자금에 대한 운용내역을 부실기재
타법인 출자현황 (48.1%)	출자회사의 상장·비상장 여부 기재를 누락하거나, 최근 사업연도 총자산·당기순손익 등 재무현황을 부실기재

3. 향후 계획

- 점검결과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 **다음 정기보고서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 안내
- 다수 항목을 부실 기재하거나 주요 서류를 첨부 누락한 기업은 '20년 사업보고서를 자진정정토록 하고, **재무사항 점검결과**는 **표본심사 대상 회사 선정 시 참고**
-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보고서 점검항목별 작성 모범사례를** 안내하는 등 올바른 사업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교육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여부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요

-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임
-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회사, 대표자, 감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외감법 제47조 제2항)

구분	세부사항
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마련하고,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자)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감사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를 이사회에 매 사업연도마다 대면 보고하고,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
외부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감사·검토하고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으로 표명

2. 점검결과 및 발생원인

점검결과		발생원인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 위반	중요한 의사결정자 부재로 미구축	대표이사 및 임원의 실형선고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정상적으로 구축 및 운영할 수 없는 경영권 공백 상태 기업이 다수를 차지
	회생절차 신청으로 미구축	기업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관리가 어렵다고 보아 과태료를 면제 하나, 회생절차 개시 이전 회계 연도와 워크아웃 진행회사는 구축의무 대상에 해당 함에도 이를 착오하여 위반
[대표자·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의무 위반	미보고 의무 위반	당기 중 기업회생절차를 신청(준비)하였다도 법원 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운영실태를 이사회 등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미평가 의무 위반	新외감법 시행으로 감사의 평가 업무가 강화되었음 에도 운영실태평가보고를 회사의 대표이사 및 내부 회계관리자가 이행한 것으로 되어있고, 감사의 서명 등이 부재
[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의견 미표명	내부회계검토의견 미표명	'18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거절을 표명 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하여 검토의견 미표명
	최종 제출여부 미확인	내부회계 관련 검토를 수행하고 의견까지 작성하였 으나, 착오 등으로 검토의견 공시를 단순 누락
	전년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면 의무대상	전년도말에는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었으나 감사대상 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된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대상이나, 아닌 것 으로 착오하여 의견 미표명

3. 유의사항

- 新외감법상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숙지 필요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주총 이사회 감사에게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에 ‘대면보고’ 후 주주총회에 보고**

[감사] 대표자로부터 보고받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기총회 1주전 이사회에 대면보고** 및 본점에 5년간 비치

- 지배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 필요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인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감사) 의견 표명 필요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필수 공시서류*의 공시누락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 필요
-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20/100 이내에서 가중**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감사인의 검토/감사의견
감사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감사인의 검토/감사의견

03

TAX



* 출처: Korean Tax Update_Samil Commentary

최신 세무뉴스

디지털세 합의안,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에서 130개국의 지지 확보

기획재정부는 2021. 7. 1.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 총회에서 130개국의 지지를 얻은 필라(Pillar) 1·2의 핵심내용 및 우리나라의 영향에 대하여 발표함. 필라 1은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 초과 이윤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매출발생국)에 배분하는 것인 바, 이는 사업장 없이도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를 가능하게 하여 지난 100년간 지속된 국제조세 원칙의 대변경에 해당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하여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데 의미가 있음. 필라 2는 각국의 조세주권 하에서 정해져온 법인세율에 글로벌 최저한세율(15%)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조세회피를 극복하기 위한 역대 가장 적극적인 시도로 평가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경영환경의 중요도 증가로 인한 글로벌 기업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하고 있음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6. 28. 확정·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완전한 경제회복 및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대전환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반도체·배터리·백신의 3대 분야로 구성된 '국가전략기술' 및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Big 3 산업의 세제지원,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스톡옵션)' 세제지원 등의 세재개편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정부는 7.1.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33조원 규모)을 의결한 바, 이는 2021년 국세수입이 약 31.5조원 규모의 추가 세수(초과 세수)가 예상되어 재정여력이 확충되는 것에 따른 것임.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의 큰 틀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백신등 방역지원, 고용/민생안정 지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4가지 축으로 구성됨

국세청,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IOTA) 가입

국세청은 제25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Intra-European Organization of Tax Administrations) 총회에 참석하여 대한민국 국세청과 K-전자세정 등을 소개하였으며, 금번 총회에서 한국은 IOTA 준회원국 가입이 확정됨. IOTA는 유럽 대륙을 대표하는 다자간 조세행정 협의체로 조세행정의 공통과제 해결 및 세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바, 우리 국세청은 IOTA 가입을 통해 유럽 과세당국들과의 교류·협력관계 확대하고 우리 진출기업들의 우호적인 세정환경 조성 효과를 기대함

최신 세무예규판례

기계장치 구매 후 성능테스트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례의 청구법인은 기계장치 구매 후 해당 기계장치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 및 불량률이 제품 양산을 위한 회사의 내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제품이 양산될 때까지 성능테스트를 위하여 상당기간 원재료비를 투입하였는바, 이러한 원재료비가 자본적 지출로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가 이번 사안의 쟁점임

처분청은 '설치 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등을 근거로 정상적으로 제품이 양산될 때까지 성능 테스트에 투입된 원재료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서 해당 원재료비를 익금에 산입하고 그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하였음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제품 개발을 위하여 취득한 기계장치를 장기간 가동하면서 투입한 모든 원재료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원재료비는 설치 중에 시운전시 투입한 것이 아니라 이를 설치하여 운전하면서 제품 개발 및 양산테스트를 위하여 장기간 투입된 원재료에 대한 비용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재료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결정함(조심2020전8532, 2021. 6. 7.)

이번 심판례는 기계장치 구입 후 이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발생한 비용 전부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구체적인 성질에 따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유사 사안의 경우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례로 사료됨

감액경정 후 증액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구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현행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함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법인세를 감액경정한 후 세무조사시 경정청구와 다른 사유로 법인세를 증액경정하였고, 증액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였는 바, 과세표준의 과소신고와 세액의 과소납부가 없어 과소 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가 이번 사안의 쟁점임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사항을 포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납부한 세액과 다른 사유로 부과된 추징세액은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함 (조심2020부1856, 2021. 4. 21.)

이번 심판례는 감액경정 후 당초 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증액경정이 이루어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한 사례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과소신고가산세와 관련하여는 이번 심판례와 유사한 취지의 국세청 유권해석이 존재하므로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징세과-1039, 2012. 9. 27, 서면-2019-징세-2538, 2019. 10. 31.)

04

KSOX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1년 유예기간 부여

2021년 6월 9일 개최된 「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기업부담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 도입 예정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에 1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2021년 7월 14일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 조정 등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유예기간 부여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자산규모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적용시기의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적용 시기

자산규모	적용 사업연도		
	개별 (별도)	연결 (유예 전)	연결 (유예 후)
2조원 이상	2019	2022	2023
5천억원 - 2조원	2020	2023	2024
1천억원 - 5천억원	2022	2024	2025
1천억원 미만	2023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유예기간 부여에 따라 각 기업별로 진행 중인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준비작업의 진행정도를 파악하고, 프로젝트 일정 조정 여부에 대한 판단, 그리고 2023년까지 기업 구성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한편, 보다 의미 있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정착을 위하여 경영진의 차원의 예비운영이나 감사인에 의한 전체 또는 일부 영역에 대한 사전감사의 실행가능성과 효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기법 등 제·개정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는 2021년 5월 11일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기법 등 제·개정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본 제·개정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적용기법이며, 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준수·이행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新모범규준 등'도 '舊모범규준 등'과 같이 기업규모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수준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적용기법은 상장중소기업 및 비상장대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비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적용내용(舊모범규준 부칙의 내용)을 부칙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적용대상 상장중소기업이라 함은 상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주요한 개정사항은 크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 55 내지 57의 내용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 102 내지 113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성요소별로 중소기업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항목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과정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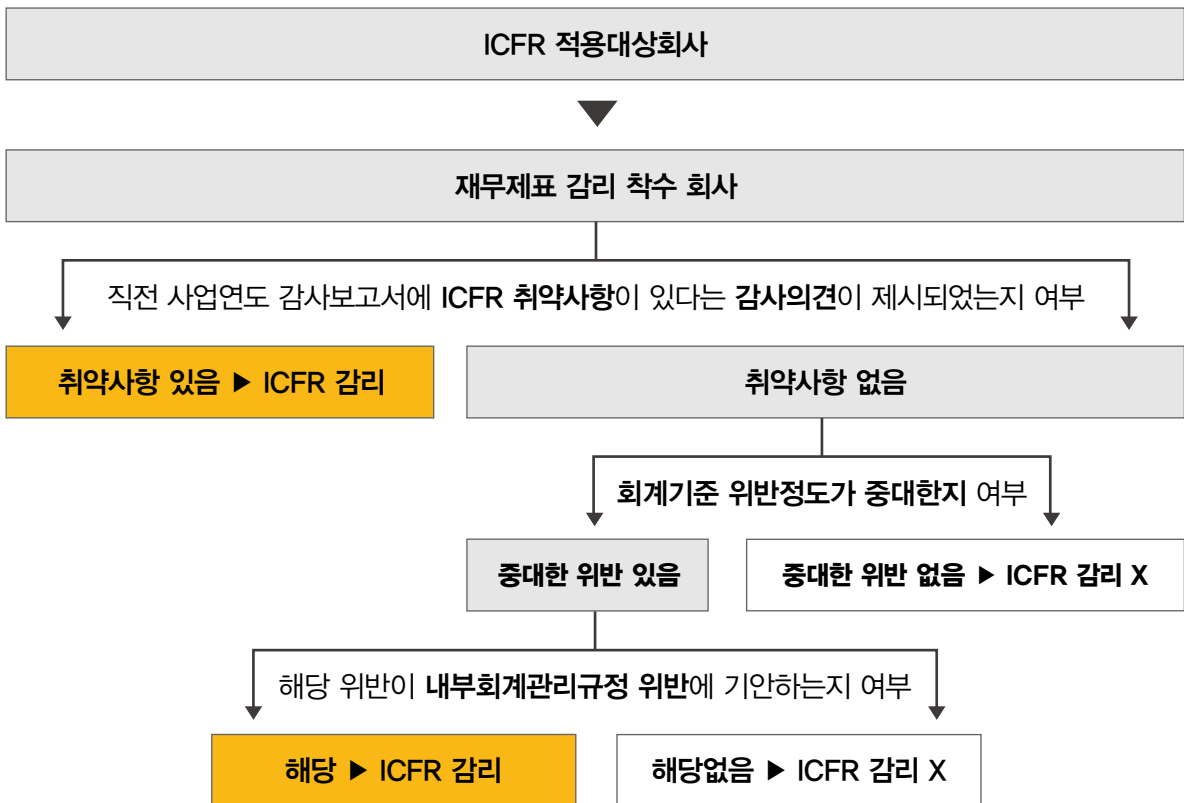
다만, 문서화가 부족하거나 비공식적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거나, 해당 통제의 효과적 설계와 운영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통제운영자는 비공식적 수단의 발생사실 또는 문서화가 부족한 통제의 효과적인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인 근거(기안, 회의안건, 미팅계획안, 회의소집 이메일 등)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동 제정 전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icfr.org> 의 자료실 (<http://www.k-icfr.org/sub/menu/data.asp?rWork=TblRead&rNo=65&rGotoPage=1&rSchText=&rType=0>)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마련 – 2021년 7월 11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은 2021년 7월 11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감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일부터 2~3년 동안* 은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계도 위주”의 감리를 운영한다는 것이며, 그 이후부터 본격감리를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 * 개별·별도재무제표의 경우 3년간 계도위주 운영,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2년간 계도위주 운영
- 계도기간 동안에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① 재무제표 감리과정에서 고의적인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②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한 경우에 한해 감리를 실시하며, 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해 ‘개선권고’ 위주로 조치하되, 고의적인 회계부정의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하게 됩니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감리 대상



* 감리착수 사유, 감리범위 및 감리조치, 그리고 본격감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https://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4048)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래전략 온라인 세미나 개최 – 2021년 6월 24일

삼일회계법인은 2021년 6월 24일 오후 '내부회계관리제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내부통제 고도화 및 연결 실행 전략 중심으로)'를 주제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래전략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2019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를 시작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시행되고 있고 2022년에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가 확대돼, 대상이 되는 회사들은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준비가 한창인 시점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가들이 감사 시행 3년 차를 맞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기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스마트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시행될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첫번째 Session에서는 한국상장사협의회 강경진 상무와 삼일회계법인의 박승운, 정구진 파트너가 유가증권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Survey자료를 기초로 한 내부회계관리제도 Compliance trends와 지난 3년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및 검토의견 현황과 향후과제를 다루었습니다.

두번째 Session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의 김두삼 파트너와 PwC컨설팅의 박현출 파트너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Optimization strategy로서 Digital SOX에 대한 소개 및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마지막 Session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의 윤여현 파트너가 최근 1년 유예가 논의되고 있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비를 위한 Management guidance라는 주제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의미와 지난 1년간의 경영진의 준비과정의 소개, 그리고 Lesson Learned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본 세미나 발표자료는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 (https://www.pwc.com/kr/ko/events/event_210624.html)에 게시되어 있으며, 관련된 영상은 YouTube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래전략 세미나로 검색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KSOX 주요 뉴스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래전략

내부통제 고도화 및
연결 실행전략 중심으로

[Youtube Live]
2021.06.24 / 오후 2시

디지털 시대의 부정적발과 위기관리

한국윤리경영학회
특별세미나

[Youtube Live]
2021.06.04 / 오후 3시

신외감법의 힘 . . . 韓 회계투명성 또 9계단 '점프'

[출처] 2021.06.11
[https://www.sedaily.com/
NewsView/22NQ1EKUL3](https://www.sedaily.com/NewsView/22NQ1EKUL3)

감사위원회포럼, 7월15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정기 포럼

[출처]
[https://www.news1.kr/
articles/?4342153](https://www.news1.kr/articles/?4342153)



Contacts

GAAP

이 수 미, Partner
+82 2 3781 9548
sumi.lee@pwc.com

TAX

최 혜 원, Partner
+82 2 709 0990
hyewon.choi@pwc.com

GAAS

성 현 주, Partner
+82 2 3781 9252
hyun-joo.sung@pwc.com

KSOX

정 구 진, Partner
+82 2 3781 9757
gojin.jeong@pwc.com



삼일회계법인 공식 YouTube 채널 [바로가기 Click](#)

삼일 전문가들의 Insight와 최신 업계 동향, 그리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삼일의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www.samil.com

S/N: 2107A-NL-002

© 2021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